

성과배분제 DC경영성과급 도입계획(안)

□ 관련 (2021년도 단체교섭 설명자료)

- ※ 성과배분제의 DC경영성과급제 도입은 2022년도에 노사협의 후 별도공지
- DC경영성과급 :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성과배분제의 일부를 퇴직연금 DC형 계좌에 적립 (절세효과 있음)

□ 추진방향

- 성과배분제 적립비율 등 세부사항 임직원 의견수렴 통해 최종안 마련
 - ✓ 적립비율 · 적립방식 · 적립시기 등 임직원 선택 불가(적립여부만 1회 선택)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4
- DC경영성과급 도입 배경, 특징, 도입요건 등 사전교육을 통한 공감대 형성 추진

< DC경영성과급 도입요건 >

구분	주요내용
① 가입기회 제한	· 도입시점 재직 임직원은 가입여부 1회 限 선택 가능 · 신규 입사자는 퇴직연금 가입시점(근속 1년 시점) 선택 가능
② 납입중지 제한	· 최초 가입 후 개인별로 희망하더라도 납입중지 불가 - 퇴직연금계좌는 퇴직사유로만 해지 가능
③ 적립비율변경 제한	· 적립비율 개인별 선택/변경 불가 - 직원은 근속년수별, 임원/상무보는 직급별 차등 가능
④ 혼합형제도 도입	· 경영성과급은 DC계좌로 납입 가능 - DB형 가입 임직원은 DC계좌 가입 필요(14,000명, 70%) · DB(99%):DC(1%) 혼합형 도입하여 DB형 퇴직급여 영향 최소화

□ 추진일정

- 2022년도 성과배분제는 주식선택권 부여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가입을 희망하는 직원들의 선택권 부여를 위해 2023년도 성과배분제 1차 지급분^{12월}부터 가입 추진

【참고】 관련 규정

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(근로소득의 범위)

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(근로자가 적립금액 등을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적립되는 경우에 한정한다)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
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4(퇴직급여 적립방법 등)

영 제38조제2항에서 “근로자가 적립금액 등을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적립 방법을 말한다.

1.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제4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제도의 가입 대상이 되는 근로자(임원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전원이 적립할 것. 다만, 각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향후 적립하지 아니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.
 - 가. 사업장에 제2호에 따른 적립 방식이 최초로 설정되는 날 <생략>
 - 나. 제2호의 적립 방식이 변경되는 날
2. 적립할 때 근로자가 적립 금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적립 방식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적립할 것
3. 제2호의 적립 방식이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제6조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규약,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 또는 「과학기술인공제회법」 제16조의2에 따른 퇴직연금급여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인공제회와 사용자가 체결하는 계약에 명시되어 있을 것
4. 사용자가 영 제40조의2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의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할 것